

헬스케어스마트홈융합연구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AAL 헬스케어 스마트홈 융합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헬스케어 스마트홈 융합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부른다.

제3조(소재)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연구소의 목적) 본 연구소는 AAL 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개발과 인력 양성 및 산학연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연구소의 사업) 본 연구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AAL 헬스케어 요소 기술 연구
2.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 수행
3. 연구 발표 및 세미나
4. AAL 헬스케어 리빙랩 운영
5. 국내 유수의 연구소와 학술교류 및 기술교류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①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연구위원, 연구원, 감사로 구성한다.

②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연구원은 연구위원이 추천할 수 있으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⑤감사는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직무) ①연구소장은 본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감사는 본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본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조직)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은 연구위원으로 한다.

④감사는 연구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2. 연구사업의 운영 방안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규정의 개정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소집과 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

기회의는 매년 3월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3조(경비 및 연구비) ①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는 정부연구비,본교의 연구소 지원금, 용역사업비,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본 연구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용역수주는 연구비의 1%이상을 연구소의 운영경비로 공제한다.

제14조(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가천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 5 장 보 칙

제15조(운영세칙)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